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6년 1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산업단지개발추진단(한시기구)의 존속기한이 당초 '13.03.11 ~ '16.02.29까지 3년이었으나, 존속기한 만료일이 '17.08.31까지로 1년 6개월 연장됨에 따라 조례 제2028호(2013.03.11.)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을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산업단지개발추진단 존속기한 만료일 연장

- 당 초 : '16.02.29까지
- 변 경 : '17.08.31까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3) 입법예고 : 2015. 12. 28. ~ 2016. 1. 4(의견없음)
4) 성별영향평가 :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」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외대상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조례 제2028호(2013.03.11.)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“2016년 2월 29일”을 “2017년 8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 칙(2013.03.11, 조례 제2028호) 제2조(한시기구) 이 조례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추진단은 2016년 2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한다.	부 칙(2013.03.11, 조례 제2028호) 제2조(한시기구) ---------- ---------- 2017년 8월 31일까지 ---------- -.